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불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4년 12월 1일

청 원 인

성 명 :	이태호	(인) 외 4 인(법인)
주 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3-0666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김광진 (인) 외 4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성명 : 이태호 외 5명	
건명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14년 12월 1일	
소개의견 지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군대 내에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고, 오히려 군의 사건 축소 및 은폐 문제만 불거져나왔습니다. 특히 보안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일체의 외부감시/고충처리 제도를 거부하면서 군대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근절하자는데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워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군대도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하는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다음의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이태호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한택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김금옥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 센터 501호		
	박래균	서울 마포구 망원로 57 3층		
	임태훈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 센터 303호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군인권 개선및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도종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군인권개선및병영문 화혁신특별위원회		
	서기호 의원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진성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청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군대 내 인권침해 실상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음. 군대 내에서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였고, 보안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일체의 외부감시/고충처리제도를 거부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들이 줄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해 군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청원함.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국회 국회의장 소속으로 '군인인권보호관'을 둔다.

나. '보호관'은 인권침해 및 차별 등을 당한 군인이 직접 조사를 요청한 사항, 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회 국방위가 조사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다. '보호관'이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망사건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라. 국방부장관은 사망, 실종 등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호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보호관은 관할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보호관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 다른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합의권고와 조정,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아.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군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세 내용

< 군인인권보호관의 임명 >

가. 국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군인인권보호관'을 둔다.

- 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음.

나. 군인인권보호관은 '국회 군인인권보호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함.

- 추천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 구성함.

다. 군인인권보호관 소속의 공무원은 군인인권보호관이 임면하고, 보호관은 국회국방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군인인권보호관보(보호관보)를 임면함.

- 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 활동 내용과 군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국방위원회에 보고함.

< 진정 및 조사·구제 >

가. 인권침해·차별행위를 당한 군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보호관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보호관에 진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서로 진정하고,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음.
- 군인이 보호관 또는 보호관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부대장은 즉시 그 뜻을 보호관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관 소속 직원은 군부대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군인으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함.

나. 보호관은 진정이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진정을 각하할 수 있음.

다. 보호관은 진정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함.

- 보호관이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망사건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호관이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라. 보호관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와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보호관은 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의 1급 비밀 지정권자의 자격을 갖음.
-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보호관이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방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마. 보호관은 관할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보호관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 다른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국방부장관은 사망, 실종 등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호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바. 보호관은 군 관계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을 언제든지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

사. 보호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아. 보호관은 조사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인권침해·차별행위의 결정과 고발, 수사의뢰 및 징계권고 >

가. 보호관은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합의권고와 조정,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보호관은 결정사항을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보호관은 범죄협의를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제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

-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호관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라. 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에 대해 인권침해·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벌칙 >

가. 보호관, 보호관보 또는 소속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보호관, 보호관보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등은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끝.